

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13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무인민원 증명발급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하는 등 무인발급기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수입증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의3 제1항)
- 나. 무인발급기의 사용부서장은 계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나 구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함
- 다.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등을 정함
- 다. 기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개선함

3. 관계법령

- 가.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

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등) ①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 “무인발급기”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.

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의 사용부서장으로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나 구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
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1조의 제목중 “계기”를 “계기 및 무인발급기”로 한다.

제24조의 단서중 “계기”를 “계기 및 무인발급기”로 한다.

별표4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설></p>	<p>제5조의3(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등) ①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 “무인발급기”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.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의 사용부서장으로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나 구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
<p>제6조(증지의 종류, 규격 및 모양) ①,②,③(생략)</p>	<p>제6조(증지의 종류, 규격 및 모양) ①,②,③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 <p>제10조(판매인 지정신청) ①(생략) ②직장급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</p>	<p>④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.</p> <p>제10조(판매인 지정신청) ①(현행과 같음) <삭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신청서에 직장금고이사장, 직원공제 회장등 직원복지회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의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,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21조(계기사용 수익금의 정산) (생략)</p> <p>제24조(증지의 소인)①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1조(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익금의 정산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증지의 소인)①----- ----- -----, 계기 및 무인발급기----- -----.</p>

